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임미애·박홍배·박민규

주철현 • 박지원 • 박수현

허 영·김용만·임오경

박해철 • 채현일 • 김한규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도 다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하고 있음. 이로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등의 상인이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

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 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 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 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 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시장등"을 "시장등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13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가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			
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			
는 <u>시장등</u> 의 상인(이하	-시장등 및 「농수산물 유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수산물도매시장</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